

	<b>보도자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	<b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b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, 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, 상호여전감독국, 대부업검사실			
책임자	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당자	홍상준 사무관(2156-9860)	총 3대
	김기한 과장(2156-9470)		진형구 사무관(2156-9475)	
	양일남 실장(3145-8260)		엄주동 팀장(3145-8262)	
	장병용 국장(3145-6770)		이길성 팀장(3145-6772)	
	박상춘 국장(3145-7550)		김정곤 부국장(3145-7552)	
			정용걸 팀장(3145-7447)	
배포일	2015.12.29.(화) 14:00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

**제 목 : 대부업법 개정(법정 최고금리 관련)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**

-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·추진
  -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(연 34.9%)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,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
- 국민들께서는 연 34.9%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,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

**1. 최고금리 규제 현황**

-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
  -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(연 34.9%)의 유효기간이 '15.12.31'일로 만료되는데다, 「이자제한법」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

- 이에 따라,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.9%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

**2. 향후 대응 방안**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'15.12.28일 "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" 및 '15.12.29일 '대부업정책협의회'를 개최하여 행자부,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
  -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.9%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('15.12.29일~12.31일)
  -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('16.1월초), 저축은행,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
    -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,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
- 이와 함께,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('16.1.1일~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)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
- 한편,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,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
### 3. 금융이용자 유의사항

- 국민들께서는 연 34.9%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,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\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\* 여신금융회사 : 금융감독원(☎1332), 대부업체 : 관할 시·군·구청

- 아울러,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 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드립니다